

APR 2023. Issue 173

ZOOM 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Where Is Grace Chang?

03 ... 고릴라를 보셨나요?*

생각과 현실

06 ... 스마트폰을 보는 다른 눈 - HS소송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보자

최신 관세 판례 분석

09 ... 보세공장 생산 군수품의 원재료를 생산지원비용에서 누락하여 수정 신고 하게 된 경우,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논리로 푸는 HS 사례

12 ... 친환경 자동차의 품목분류

Global Customs Insight

17 ... EU의 탄소국경세 부과에 따른 산업계 탄소 규제 강화

FTA 및 수출입 실무 안내

19 ... 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 업무 처리 지침

관세무역개정 내용과 의견

22 ... 「관세법」 일부 개정



장 승 희
대표 관세사

“
자신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도 살펴보는
어른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



동영상속에서 학생들이 농구공을 던지며 놓고 있습니다. 흰 셔츠의 3명과 검은 셔츠의 3명이 각각 팀을 이루어 공을 패스합니다. 1분짜리 동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흰 셔츠입은 학생들 간에 농구공이 몇 번 오고 가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횟수를 적어서 교수님께 제출합니다.

학생들의 답변지를 받은 후에 교수님이 질문합니다. '고릴라를 보았나요?' 고릴라 옷을 입은 여학생이 무대중앙에 등장해 9초간 가슴을 두드리고 퇴장하였습니다. 그러나 50%의 학생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과제에 집중하여 패스 횟수를 세고 있던 학생들은 영상 중간에 등장했던 고릴라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달 생각과 현실은 '스마트폰을 보는 다른 눈 - HS소송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보자' 입니다. 최신 관세 판례 분석은 '보세공장 생산 군수품의 원재료를 생산지원비용에서 누락하여 수정신고 하게 된 경우,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이며, 논리로 푸는 HS 사례는 '친환경 자동차의 품목분류'입니다. 또한 Global Customs Insight는 'EU의 탄소국경세 부과에 따른 산업계 탄소 규제 강화' 이며, FTA 수출입 실무 안내는 '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 업무 처리 지침', 관세무역개정 내용과 의견은 '관세법」 일부 개정' 입니다.

左顧右盼(좌고우면)은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걸눈질한다'는 사자성어입니다. 중국 위나라의 시조 조조의 셋째아들 조식이 한 장군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살펴봐도 마치 (견줄) 사람이 없는 듯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질(吳質) 장군의 의기양양하고 자신만만한 모습을 찬양하며 쓴 시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좌고우면의 뜻이 바뀌었습니다. '결눈질'이라는 단어가 올곧음을 지향하는 후대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이쪽저쪽을 돌아본다는 뜻으로, 앞뒤를 재고 망설임을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합니다.

좌고우면이란 단어가 한동안 매스컴에 오르내렸습니다. "좌고우면 하지 않고 직진했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자평한 분이 있었습니다. 또 "좌고우면 하지 않고 원칙대로 할 생각"이라고 말한 분도 있습니다. 이쪽저쪽 돌아보지 않고, 앞뒤를 재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행동함은 중요합니다. 더욱이 5천만 국민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분들에게는 편파적이지 않은 공평함이 요구됩니다.

한국인의 특성은 좌고우면 하지 않고 빠른 결단을 내리며 실행함 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넘어 세계에서 일등국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K-POP, K-MOVIE, K-FOOD, K-CLASSIC, K, K, K... 최빈국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가 개발도상국을 넘어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나라들을 보며 국가적인 원조에 더해 개인 후원과 선교사까지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나와 우리편에게만 집중하는 경향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패거리로 몰린 사람들은 다른 패거리에 등을 돌리고 적대시합니다. 양측 모두 좌고우면 하지 않기에 자신들 만이 정의롭고 우월하다고 주장합니다. 고릴라를 보지 못하는 50%도 안되는 사람들이 국민의 전체인양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은 1999년 미국의 하버드대학 심리학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 후 동영상을 재생했을 때에 모든 학생들은 당연히 고릴라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고릴라를 보지 못했던 50%의 학생들은 당황합니다. "어떻게 못 봤지??" 인간의 인지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실험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식이 자신과 세상에 대해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관심사에 집중하느라 기대하지 않은 것은 인식조차 하지 못한 것이지요. 인간에겐 자신의 기대와 일치하는 것, 즉 보고 싶은 것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입증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좌고우면 하는 아이들로 키워야 합니다. 다른데 한눈 팔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하라는 요구는 아이들을 눈쁜 장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의대입시'에 집중하라고 하는 부모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학입시까지 10년의 세월동안 고릴라 따위에 한눈을 팔아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어른들의 탐욕에 떠밀리며 나의 욕구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친구들의 아픔에 무관심해지고 결국은 인지할 수 없어집니다. 과연 인지능력이 떨어진 의사가 환자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자신만 아는 사람이 아



나라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도 살펴보는 어른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내 욕구, 내 욕심에만 집중하는 무늬만 어른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이미 나이가 든 우리도 좌고우면 해야 합니다. 이웃을 배려하는 어른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인식하는 무늬만 어른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이 보이고 느껴지며 함께 치유하려 노력하는 진정한 어른 말입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오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경희, "보이지 않는 고릴라", 중앙일보, 2022.02.08, 오피니언 분수대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Seunghee Chang*



생각과 현실

스마트폰을 보는 다른 눈 - HS소송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보자

우리는 스마트폰을 밤낮없이 끼고 산다

스마트폰이 무엇인지 각자의 시각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수출입 기업과 관세사는 관세와 수출입규제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물품의 품명, 성분, 기능, 용도 등을 종합해서 HS관세율표의 해석과 번호의 관점으로 설명한다

먼저 스마트폰은 봐야 하니 디스플레이(HS 8528)가 있고, 들어야 하니 스피커(HS 8518)가 있고, 음악을 더 좋은 소리로 들리게 하기 위해 음성재생기(HS 8519)가 있다. 또한 통화를 해야 하니 전화기(HS 8517)인데 이러한 통신을 위해서는 안테나(HS 8517), 주파수 처리부(HS 8517), 디지털처리부(HS 8517)로 된 모듈이 있다. 또한 인터넷을 보고, 자료처리, 문서작성을 하니 컴퓨터(HS 8471)의 기능까지 있다.



서 영 진

전무/관세사

wedin8@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기업심사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또한 스마트폰은 전화기, 디스플레이장치, 컴퓨터, 디지털음향기기인데, WIFI기능과 블루투스 기능도 있어서 복합기능을 가진 기기로도 볼 수 있다. 스마트폰의 HS 분류는 이미 결정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찾을 필요는 없겠으나, 이러한 시각은 HS분류관점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세관공무원과 관세사가 가장 잘 볼 수 있다.

세상의 모든 물품을 어떤 HS로 분류해야 하는가는 지금도 기업과 관세사에서 하고 있는 일이다. 모든 물품에 HS CODE를 부여하는 기술은 특히 부분품, 소재 분야에서 물품지식과 HS지식이 없으면 불가능한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영역이 된다. 2차전지 양극재, 건강기능식품원료인 인삼엑기스, 2차전지용 동박, 복합화력발전용 발전세트와 터빈, PCR검사기, 산업용과 컴퓨터용 파워서플라이,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등 이들의 HS 분류는 관세사가 분류하는 것인지 변호사나 판사가 하는 일이 아니다.

HS 분류는 관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에 한국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분쟁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의 HS 소송과정을 보면 기업에게 불리하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HS 소송에서 세관은 HS 전문성을 가진 소속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데, 기업은 변호사만 소송을 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심판 이후에는 관세사가 HS소송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변호사가 관세사보다 법률과 소송에서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지만, HS분류는 관세사가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소송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판사도 HS 분류에 전문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므로 세관은 HS에 전문성이 낮은 판사를 설득하기에 더 용이한 위치에 있다. HS 소송 시 관세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HS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세관공무원이 현란한 기술을 이용해 핵심쟁점을 숨기고 HS 원리는 설명하지 않는다면 판사나 변호사를 이기기는 쉽다. HS에 대해서는 국가대표인 세관공무원이 동아리 수준의 판사들과 축구경기를 하는 것이 현재의 HS소송이라고 생각된다.

HS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관세사의 참여가 어떤 형식으로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변호사 단독으로 HS소송을 다루는 현행 행정소송제도는 개선해야 한다.

관세법과 행정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HS소송과 조세심판에서 관세사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넣어야 하고, 변호사로 구성된 국회법사위원회에는 HS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변호사와 관세사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최근 HS에 대한 몇몇 법원판결은 잘못된 판결로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법원의 판결은 HS 소송에서 최종 의사결정인데 잘못된 판결로 인해 관세청이나 기업이 받는 피해는 엄청나다. 소송을 따르자니 현실과 맞지 않고, 현실을 따르자니 일관성이 무너진다. 관세청은 무조건 과세를 하고 기업은 다시 소송을 할 수밖에 없고, 선판례로 인해 어느 기관이 나서서 바로잡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HS쟁송인 조세심판에서는 HS비전문가의 참여를 최대한 줄이고, 행정소송에서는 관세사의 참여를 의무화해서 의견서를 받거나 청문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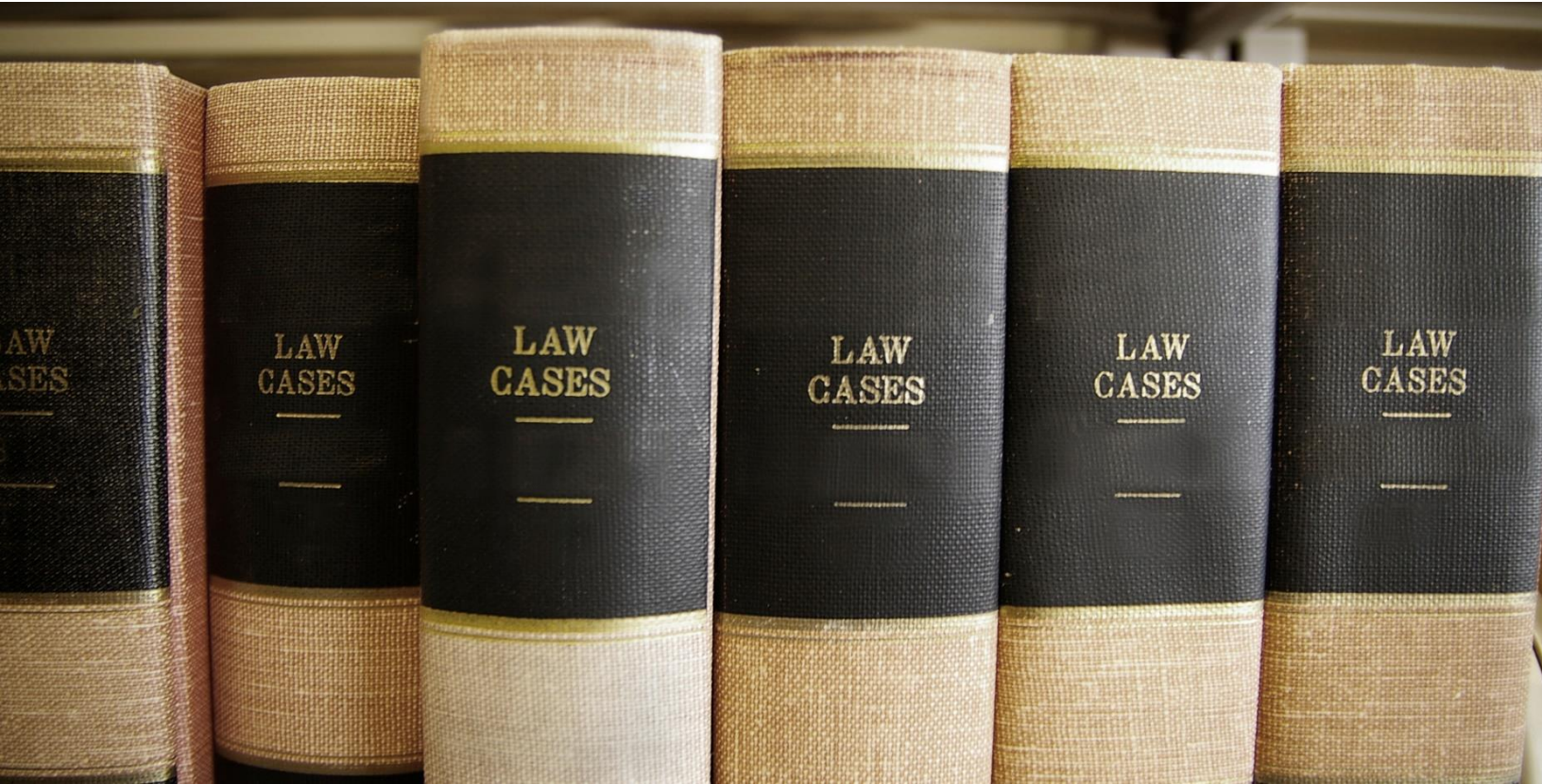
또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의 발언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관세청의 HS소송 패소율에 대해 심한 질책을 하지 말아야 한다. HS분류는 외국에서도 많은 분쟁이 존재하며, 하나의 물건에 대해 보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HS분류에 대한 견해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심지어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물건에 하나의 번호로 분류하는데 생각의 차이가 어찌 일치될 수 있겠는가?

세관공무원은 HS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재판부에 유리한 것만 말하지 말고 진실되게 기업이 보지 못하는 자료까지 소송에서 공개해야 한다. 납세자에게 정확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세관공무원의 의무이지 민사소송처럼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HS소송에서 비전문가인 판사에게 변호사만으로 소송을 하면서 품목분류 전문성과 방대한 내부자료를 이용해 소송을 이기려고만 하는 세관공무원으로 인해 수출입기업과 관세사는 참 힘겹다.

새로운 물품이 쏟아져 나와 HS분류가 불일치할 수밖에 없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최대한 납세자가 생각하는 HS에 대한 기준과 HS분류가 일치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원에 맡기지 말고 HS전문가가 모여있는 관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 납세자가 수궁할 수 있는 결정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정한 HS 분류가 이루어지는 날이 지속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 보자.



최신 관세 판례 분석

보세공장 생산 군수품의 원재료를 생산지원비용에서 누락하여 수정신고 하게 된 경우,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1.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2013.12.19. 우리나라 AAA(정부기관)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직접 구매한 원재료 및 AAA이 무상으로 제공한 엔진 등의 관급품(이하 "쟁점관급품")을 사용하여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군수품(이하 "쟁점물품")을 AAA에 납품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6.4.6 부터 2016.12.21 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188조의 제품과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AAA에 쟁점물품을 판매한 금액(이하 "계약금액")에 청구법인이 별도로 해외 거래업체에게 직접 지급한 기술비용을 더한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홍혜리

관세사

hrhong@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기업심사
- 외환 컨설팅

- 처분청은 AEO 인증업체이자 수입세액 정산업체인 청구법인의 2019년도 수입세액을 정산한 결과, 쟁점관급품이 쟁점물품에 대한 생산지원에 해당함에도 그 가격이 계약금액이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2020.12.16. 신고누락된 생산지원비용을 과세대상이라 결정하고, 2021.2.19.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위 결정내용이 포함된 '통관적법성 자율점검자료'를 제공하였다.
- 청구법인은 2021.3.29. 위 생산지원비용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수정 신고·납부하는 한편, 위 가산세에 대한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4.5. 이를 거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위 가산세 면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1.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인 주장)

- 쟁점거래에서 '판매자'인 청구법인이 '구매자'인 AAA만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 쟁점관급품의 반입가격은 반입시 화물관리를 하기 위한 참고가격으로, 부정확한 반입가격은 「관세법」상 물품의 과세가격이 될 수 없다.
- 쟁점관급품의 가격은 청구법인이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미정(未定)이었던 가격이 추후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없다.
- 쟁점물품은 정부(AAA)가 수입하여 국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군수품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세 부담의 실익을 고려할 이유가 없는 물품이다.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은 쟁점관급품의 가격을 확인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이다.

- 청구법인은 쟁점관급품의 가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청구법인은 AAA과의 협의를 통하여 자력으로 쟁점관급품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청구법인은 쟁점관급품의 보세공장 반입 시점에 이미 쟁점관급품의 공급가격을 인지하고 있었고, 잠정가격 신고할 수 있었다.
- 가산세 부과처분 또는 가산세 면제 거부처분은 세수 목적의 실익을 고려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3. 심리 및 판단

아래의 사유를 고려해 볼 때, 단순히 생산지원비의 일부를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생산지원비의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물품이나 용역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비록 쟁점물품의 수입자이기는 하나 실제적으로는 쟁점물품의 수출판매자이어서 AAA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쟁점관급품의 가격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쟁점물품은 군수품이어서 쟁점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쟁점관급품의 제조자, 공급가격 등의 주요 정보 또한 쉽게 공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구매자인 AAA이 청구법인에게 해당 정보를 알려줄 의무도 없는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이 쟁점관급품의 가격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쟁점물품은 군용 헬리콥터로 관세율이 무세이고 정부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의 경우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관급품의 가격을 누락신고할 동기나 목적이 없어 보인다.
- 청구법인은 2013.12.19부터 현재까지 쟁점계약과 동일한 계약 하에서 쟁점물품을 AAA에 납품하여 왔고 처분청을 포함한 관세당국이 이에 대하여 8년여 동안 11차례에 걸쳐 관세누락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음에도 관급품에 관한 신고누락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바 청구법인 역시 쟁점관급품에 관한 신고의무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청구법인은 법규준수도가 높은 AEO 인증업체이자 수입세액 정산업체로서 그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논리로 푸는 HS 사례

친환경 자동차의 품목분류

1. 친환경 자동차 보급의 확대

미국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차량 탄소배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전체 시장 대비 70% 가까이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 정책에 이어 이번에는 규제를 통해 전기차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제6차 HS 개정(2017년)에서는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발전 동향을 반영하여 제8702호(10인승 이상 자동차), 제8703호(10인승 미만 승용차), 제8711호(모터사이클 등)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을 위한 소호를 대폭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7차 HS 개정(2022년)을 통해 승용차나 모터사이클 뿐 아니라 8701호(트랙터)와 제8704호(화물자동차)에도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과 구분하기 위해 친환경 차량에 대한 소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정 호

관세사

jhahn@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FTA 컨설팅
- 관세환급
- 품목분류

2. 친환경 자동차 종류별 품목분류

[친환경자동차 종류]

구분	전기자동차(EV)	하이브리드 자동차(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	수소연료전지 자동차(FCEV)
동력발생장치	모터	엔진 + 모터	모터, 엔진(방전시)	모터
에너지(연료)	전기	화석연료, 전기	전기, 화석연료(방전시)	전기(수소로 생성)
구동형태	순수 전기 에너지로 구동(엔진 없음)	주행 중 대용량 배터리 충전 / 방전	외부 전원에서의 전력 공급	연료전지 내 수소/산소 전기화학 반응으로 전기 생산 / 구동
특징	무공해 차량	내연기관/모터를 적절히 작동시켜 연비 향상	단거리는 전기, 장거리는 엔진 사용	무공해 차량
주요차량	아이오닉5(현대) 모델S(테슬라) iX3(BMW)	니로(KIA) 프리우스(도요타) 시빅(혼다)	Volt(GM) F3DM(BYD) Kama(Fisker)	넥쏘(현대) Equinox(GM) Mirai(도요타)

(출처: 환경부)

1) 전기자동차(EV)

디젤 엔진과 가솔린 엔진 등의 내연기관을 장착한 자동차나 전동기와 내연기관을 같이 장착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와는 다르게 순수하게 전기만을 사용하여 구동하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이차전지를 동력원으로 전기 모터를 구동하여 움직이는 전기자동차 이므로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으며 소음이 작은 장점이 있습니다.

구분 - 전기자동차(EV)	HS CODE
9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8703.80
10인승 이상의 차량	8702.40
화물자동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덤프차)	8704.10
화물자동차(일반화물차)	8704.60
화물자동차(기타화물차; 냉장차, 냉동차, 탱크차 등)	8704.60
트랙터	8701.24

2) 하이브리드 자동차(HEV)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자동차로 내연기관 엔진과 전기모터를 조합해 구동합니다. 출발과 저속 주행 시 엔진의 가동 없이 모터 동력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전기모터는 차량 내부에 장착된 고전압 배터리로부 터 전원을 공급받고 배터리는 자동차가 움직일 때 충전됩니다. 차량 속도나 주행 상태 등에 따라 엔진과 모터의 힘을 적절하게 제어하여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자동차입니다.

구분 - 하이브리드 자동차(HEV)	HS CODE	
9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가솔린엔진+전동기	8703.40
	디젤엔진+전동기	8703.50
10인승 이상의 차량	디젤엔진+전동기	8702.20
	가솔린엔진+전동기	8702.30
화물자동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덤프차)	8704.10	
화물자동차	디젤엔진+전동기	8704.41(총중량 5톤 이하)
		8704.42(총중량 5톤 초과 20톤 이하)
	가솔린엔진+전동기	8704.43(총중량 20톤 초과)
		8704.51(총중량 5톤 이하)
		8704.52(총중량 5톤 초과)
트랙터	디젤엔진+전동기	8701.22
	가솔린엔진+전동기	8701.23

3)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

차량 추진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외부 전원으로부터 에너지를 끌어와서 저장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말합니다. 모터(주)와 연료 엔진(보조)이 조합되어 구동하는 원리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차의 장점을 결합한 것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는 외부 전원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자체 엔진과 발전기에서 생산한 전기만을 저장하여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외부 전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보다 긴 구간을 모터만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		HS CODE
9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가솔린엔진+전동기	8703.60
	디젤엔진+전동기	8703.70
10인승 이상의 차량	디젤엔진+전동기	8702.20
	가솔린엔진+전동기	8702.30
화물자동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덤프차)		8704.10
화물자동차	디젤엔진+전동기	8704.41(총중량 5톤 이하)
		8704.42(총중량 5톤 초과 20톤 이하)
	가솔린엔진+전동기	8704.43(총중량 20톤 초과)
		8704.51(총중량 5톤 이하)
	8704.52(총중량 5톤 초과)	
트럭터	디젤엔진+전동기	8701.22
	가솔린엔진+전동기	8701.23

4) 수소연료전지 자동차(FCEV)

물을 전기분해하면 양(+)극에서 산소가 생성되고 음(-)극에서 수소가 생성되는데, 이것을 반대로 하여 수소를 이용해서 물을 만들면 그 과정에서 전기가 생성됩니다. 수소차는 이렇게 발생된 전기를 이용해 모터를 구동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입니다. 차 내부에는 연료전지, 모터, 배터리, 수소탱크 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는 수소탱크에 수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연료를 충전하므로 충전시간이 5분 내외로 짧을 뿐만 아니라 충전 후 이동거리도 깁니다. 그러나 생산비용이 높다는 점, 전기차에 비해 충전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구분 - 수소연료전지 자동차(FCEV)	HS CODE
9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8703.80
10인승 이상의 차량	8702.40
화물자동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덤프차)	8704.10
화물자동차(일반화물차)	8704.60
화물자동차(기타화물차; 냉장차, 냉동차, 탱크차 등)	8704.60
트렉터	8701.24



Global Customs Insight

EU의 탄소국경세 부과에 따른 산업계 탄소 규제 강화

유럽연합(EU)의 입법부인 유럽의회가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수입품에 이른바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내달 18일 처리하였습니다. EU는 법안이 시행되는 올해 10월부터 역외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유럽의회는 18일 탄소국경세 법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 찬성 487표, 반대 81표, 기권 75표로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탄소국경세는 EU로 수출되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의 생산 시 배출되는 탄소량 추정치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나지원
관세사

jwna@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FTA 컨설팅
- 관세환급
- 기업심사

EU는 탄소국경세를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며, 법안이 시행되는 올해 10월 1일부터 부과 전인 2025년 말까지는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만 지우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EU의 탄소국경세 부과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게 일종의 추가 관세가 늘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고 탄소배출량이 높은 제조업 위주의 교역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산화탄소 순수출국으로 분류되어 전 세계에서 탄소 수출량이 약 1.5%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EU의 탄소국경세 부과가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에게는 관세가 더 부과되어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생산 공정 특성상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국내 철강 회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강의 경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EU 수출액이 크고 탄소배출이 다른 국가보다 높은 편입니다.

포스코 및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 회사는 탄소국경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친환경 생산기술을 도입하는데 노력하고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적시의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소 규제가 우리 수출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탄소 배출 감·인증,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 등 정책 지원까지 요청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도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을 출범시키며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 및 관련 기업은 우리나라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살펴보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책이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119/117514627/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25885?s04>



FTA 및 수출입 실무 안내

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 발급 업무 처리 지침

자유무역지역이란, 외국인투자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관세법, 대외무역법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어 물품의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및 무역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자유무역지역에 보관된 물품을 국외 반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국내산임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이번 지침을 통해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하는 물품도 한국 원산지증명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본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이 하나

관세사

hnlee@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관세환급
- 품목분류

I. 목 적

- 이 지침은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II. 적용 대상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비거주자등이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해 법 제11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하는 때에 이 지침을 적용함

III. 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 절차

1. 기관발급 신청. 심사

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또는 생산자는 이 지침 적용 대상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이하 “발급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발급기관장에게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아래의 증빙서류를 제출

- 1)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서(「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의3 서식)
- 2) 생산자와 비거주자등간의 송품장, 거래계약서 등 거래 증빙서류
- 3)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비거주자등의 물품에 대한 보관. 국외반출 등 취급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4)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제21조제2항제1호(반입내역) 및 제2호(반출내역)에 따른 재고기록 등 반출입 물품간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다. 상기 Ⅲ. 1. 나. 1)부터 3)까지의 서류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발급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고 이후에는 최초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와 기존에 제출된 서류의 명칭·일련번호 등을 “비고” 란에 기재하여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증빙서류 예시>

- ① 자유무역지역에 반입 신고한 물품을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Ⅲ. 1. 나. 1)의 서류
- ② 생산자와 비거주자등간 단일한 거래 계약을 체결한 물품을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Ⅲ. 1. 나. 2)의 서류
- ③ 비거주자등의 모든 물품에 대한 취급 권한을 가진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지속적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Ⅲ. 1. 나. 3)의 서류

라. 발급기관장은 고시 제32조제1항에 따른 심사 이외에, 이 지침 Ⅲ. 1. 나.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출입 신고 된 물품 간 동일성 여부* 등을 확인

* 품명, 규격, 수량, 중량, 품목번호 등

마.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발급기한, 소급발급, 보정, 현지확인, 재발급 및 정정발급 등 절차는 규칙 제10조제3항부터 제12항까지를 따름

2. 자율증명 절차

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또는 생산자가 이 지침 적용 대상 물품에 대해 규칙 제1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 Ⅲ. 1. 나.의 증빙서류에 기초하여야 함

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관리 등 원산지증명서의 작성과 관련한 그 밖의 절차는 규칙 제14조에 따름

3. 유의사항

-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 작성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또는 생산자는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 제출해야 하며, 법 제4장에 따른 원산지검증과 법 제44조 등에 따른 처벌의 대상임

IV. 시행일자

- 이 지침은 2023년 4월 3일부터 작성·발급 신청되는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적용함



관세무역개정 내용과 의견

「관세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무역금융 등 수출입기업 지원 시 무역금융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납세의무자의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 확대 등(제116조)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급부, 지원 등을 위한 자격을 확인·심사하거나 은행 등이 불법 외 환송금을 차단하기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이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직접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거나 관세청장이 대행기관에게 과세정보를 대신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김태경

관세사

tkkim@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기업심사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2)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등은 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나. 연구목적 관세무역데이터 등의 제공 근거 마련(제322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국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관세청장이 생산·가공·분석한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관세청 내에 설치된 시설 내에서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

2023년부터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절차 구체화, 보세판매장 특허기간 연장, 납세자 과세정보 제공 범위 확대,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 제한 등을 위해 관세법을 개정하였으며, 납세자 과세정보 제공 범위 확대 등과 관련하여 4월 1일부터 개정 법령이 시행됩니다.

개정 전 관세법 제116조는 세관공무원의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며,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한 경우로서 국가기관(쟁송, 관세범 소추 시), 법원(제출명령 및 법관 발부 영장), 세관공무원 상호간 관세 부과 등 목적, 통계청장(국가통계작성 목적), 다른 법률에 의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개정에 따라 당사자 동의를 있는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자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은행 등도 과세정보 요구가 가능해졌으며,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거래자 거래, 지급, 수령 등을 확인할 때에도 과세정보 요구가 가능해졌습니다.

과세정보 제공 사유 확대에 따라 무역금융 신청 편의가 제고되었으나, 과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관세법 제116조 제7항에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등에 대해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관세법 제277조의3을 신설하여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함을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관세법 제322조에 조항을 신설하여 연구 목적에 한해 관세무역데이터 등을 국회 등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과세정보, 관세무역데이터 활용이 용이해진, 바람직한 개정으로 보입니다.

4. 시행일자

2023년 4월 1일 시행 (관세법 제116조, 제277조의3, 제322조)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